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68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김성원·유용원·박성민

김선교 • 고동진 • 박충권

김위상 · 조승환 · 권성동

임이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설 조성, 단체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게임 산업의 발전 및 이스포츠 진흥 정책 등에 따라 이스포츠 산업이 확장되며 이스포츠 선수 등 이스포츠인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이스포츠인 분야의 인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으로, 현행법에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최근에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점차 스포츠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국가적 차원의 이스포츠 육성·지원이 필요함.

또한,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는 지역에 연고를 둔 프로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출연 또는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지역 기반의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있음. 이를 참조하여 이스포츠의 경우에도 지역 연고 기반의 전문 이스포츠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활성화를 도모, 이스포츠가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내 공공기관이 지역 기반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출연하거나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모하고"를 "도모하고,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을 보호하며," 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지역 기반의 전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연고 프로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역 연고 프로이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중 "이스포츠대회를"을 "국·내외 이스포츠대회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지원"을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 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이스포츠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스포츠의	제1조(목적)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	
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를 <u>도모하고</u> 이스포츠를 통하	도모하고, 이스포츠 분야의
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u>인권을 보호하며,</u>
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생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①
략)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_
<u><신 설></u>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지역
	기반의 전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연고 프로이스
	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
	역 연고 프로이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u>수 있다.</u>
제11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	제11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

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u>이스포츠대회를</u>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저 지원) ①・② (생 략) <u><신 설></u>

③ (생 략)

원 등)
국·내외 이스포츠
대회를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u>지원 등</u>)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이스포츠가 「국제
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
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